

# 「녹용 명칭 단일화」 공감대 확대

## 식의약청 주최 녹용 간담회서...양록협회 회분함량 35% 주장

주 재 승/한국의약신문 취재부장

명칭과 회분율 기준 및 검사방법을 놓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녹용류에 대한 명칭 및 규격기준이 빠르면 연내에 개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31일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 유통 단체 등 관련단체와 학계,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용 간담회」를 열고, 현행 녹용정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 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은 녹용류 명칭을 「녹용」, 「녹용각」으로 이원화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녹용」으로 환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쟁점이 된 녹용의 회분율 기준에 대해선 소비자·생산자 단체와 대한약사회가 35% 이하를 제시한 반면 한의협, 한약협, 한도협, 약공, 의수협, 생약협 등이 45% 이하를 제안, 상당한 격차를 나타냈다.

한약관련 6개 단체는 『녹용은 성상에 따라 한의약적 약리작용과 한방의료적 사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품질에 대한 평가도 분골, 상·중·하대 등으로 해왔다』면서 『회분자체가 녹용의 한의약적 약리작용의 지표물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 녹용류 명칭 및 회분율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간담회에 앞서 식약청에 제출한 「녹용 규격과 관련한 한약 관련 단체의 입장」이란 공동 건의문을 내고 녹용 명칭 환원과 녹용의 회분율 기준을 전통적 관행수준인 45%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 대한약사회 등은 녹용의 회분율을 35%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회분율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현재 국내 녹용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수입 녹용의 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양록협회는 녹용 명칭 및 회분율 조정은 별도로 정부에 합리적인 녹용 정책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양록협회는 향후 녹용의 성분(지표물질) 및 효능 효과를 연구해 현실에 맞는 규격 기준을 설정할 것과 밀수 및 부정품 유통방지를 위한 녹용 규격품제도 정착, 내·외산 녹용의 균형수급을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에 녹용을 추가 지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녹용 명칭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선 『이제 개정시기가 됐다』고 밝히면서도 회분율

## 각계의견

단 체	의 견			
	명칭	회분의 규격기준	정 의	기타 의견
한국양록협회	녹용 단일	녹용 기준 35% 이하	명칭을우리말로(매화록 →꽃사슴) 북미 엘크추가「동속근연동물」삭제 어린뿔 →골질화덜된 뿔	성상 화녹용: 17~20cm → 25~40cm, 지름 4~5cm → 4~6cm 적녹용: 20~40cm → 40~60cm, 지름 4~6cm → 5~7cm 대녹용: 70~100cm, 지름 7~10cm
대한약사회	녹용 단일	녹용 기준 35% 이하 - 상품(25.0% 이하) - 중품(30.0% 이하) - 하품(35.0% 이하) 그 이상 녹각	3살 이상의 수컷, 각질화되지 않은 신생각(뿔길이하 60~75일 사이)를 건조한 것	-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녹용 단일	녹용 기준 45% 이하	「어린 뿔」삭제 → 약간 각질화된 뿔	체중을 감안할 것 길이: 17~100cm, 지름: 3cm 이상 (매화록 기준)
대한한약협회	녹용 단일	녹용 기준 45% 이하 - 상품(25.0% 이하) - 중품(25.01~35.0% 이하) - 하품(35.01~45.0% 이하) 그 이상 녹각	· 동속근연동물의 털이 → 동속근연동물의 솜사슴의 털이 · 어린 뿔 → 골질화 되지 않은 뿔	성상 화녹용: 17~20cm → 17~80cm, 지름 4~5cm → 3cm 이상 마녹용: 20~40cm → 20~100cm, 지름 4~6cm → 4cm 이상
대한한의사회	녹용 단일	45% 이하	-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녹용 단일	35% 이하	-	규격품 유통 필요
약학대학생약학교수협의회장(이경순)	녹용 단일	녹용 기준 45% 이하 - 상품(25.0% 이하) - 중품(25.01~35.0% 이하) - 하품(35.01~45.0% 이하) 그 이상 녹각	-	-
한국생약협회	녹용 단일	녹용 기준 45% 이하 45% 이상은 녹각	-	-
한국한약도매협회	녹용 단일	녹용 기준 45% 이하	-	-
한 의과대학본초학교수협의회	녹용 단일	임상적 효능을 기준 -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어 규격설정	-	임상적 효능을 위주로 규격 제정

조정은 『녹용의 회분율이 35%를 벗어나려면 이를 뒷받침 할만한 연구 결과가 있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그럴지 못하다』고 말해 녹용 회분율이 35%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따라서 명칭 및 회분율 조정은 △간담회 결과를 분석하고 △관련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중앙약심을 거쳐 최종 확정짓기 위해서는 빨라도 금년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